수요물자 가격관리규정



[시행 2015. 8. 25.] [조달청훈령 제1709호, 2015. 8. 20., 일부개정]

조달청(구매총괄과), 070-4056-746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요물자 구매를 위한 예정가격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수요물자 구매를 위한 예정가격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수요물자"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 중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물품 및 용역(임차 및 대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2. "협정적용물자(이하 "협정물자"라 한다)"란 수요물자 중「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물자 및 용역을 말한다.
- 3. "담당과장"이란 구매사업국 각 과(팀)장 및 지방청 구매담당 과(팀)장을 말한다.
- 4. "입찰집행관"이란 해당 물품구매의 입찰 또는 수의시담을 주관하는 사무관급이상의 공무원을 말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관이 별도 지명할 수 있다.
- 5. "가격담당공무원"이란 해당 물품구매의 가격을 담당하는 4급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 6. "계약관"이란「국가계약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대리계약관·분임계약관 및 대리분임계약관을 포함한다)으로 『조달청 회계직 공무원 임명규정』에 명시된 조달물자 계약관을 말한다.

제2장 예정가격의 결정

제4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 계약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 1. 거래실례가격
- 2. 원가계산가격
- 3. 감정가격
- 4.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 5. 견적서가격 등
- ② 계약관은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는 계약 수량, 이행기간, 품질,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 ③ 계약관은 예정가격 결정기준의 조정이나 예정가격 변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심사협의회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5조(예정가격 조서의 작성)** ① 가격담당공무원은 가격조사 또는 원가계산에 따라 예정가격 기초조사서를 작성하고 담당과장은 이를 계약관에게 보고한다.
 - ② 계약관은 예정가격기초조사 범위내에서 예정가격을 사정하여 예정가격 조서에 기록 날인 및 봉인한 후 이를 직접 보관하거나 담당과장이 보관하도록 하였다가 입찰 또는 수의시담직전에 입찰집행관에게 수교한다.
 - ③ 기초금액의 공개 및 복수예비가격조서의 작성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제30조를 따르며,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다.
- **제6조(예정가격의 개봉 및 보관)** ① 입찰집행관은 입찰장소에 예정가격조서를 지참, 입찰 또는 수의시담을 집행하며 개찰선언 후에 예정가격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거나 시담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당과장은 예정가격조서를 재봉인, 날인 후 보관한다.
- 제7조(입찰집행) ① 입찰집행관은 입찰집행 시 예정가격의 누설이나 입찰자의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중지하고 즉시 계약관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계약관은 입찰결과 예정가격의 85%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할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전에 입찰가격산출내역, 입찰배경 등을 서면제출 받아 제10조제3항의 염매가격 등 비정상가격을 구분하는 자료로 참고할 수있다.
- 제8조(예정가격 자료의 보관 및 관리) ① 가격담당공무원은 조사·수집한 각종 가격관련 자료를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정리·보관하여야 한다.
 - ② 가격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및 관련 자료를 타인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규정에서 허용되었거나 계약관이 승낙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제3장 거래실례가격 조사

제9조(거래실례가격의 조사) ① 거래실례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한다.

-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가격정보』에 게재한 가격
-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3. 공공기관이 구매한 실례가격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 4. 법령에 따라 결정된 가격 또는 요금
- 5. 가격담당공무원이 2이상 사업자로부터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제5호의 가격조사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거래되는 가격을 다양하고 폭넓게 조사하여 적정한 가격을 포착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제5호의 조사대상자 선정은 해당물품의 거래량이나 신뢰도 등을 감안하여 계약상대방으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이상 사업자로 하되 계약대상 업체 중 대기업, 중소기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대기업, 중소기업 각 1개업체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가격담당공무원은 가격조사대상자로부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거래장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득하여 확인하거나, 필요시에는 관계기관에 조회 또는 현지 출장하여 조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가격조사대상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제3자나 수요자를 면접하여 작성한 붙임 제1호서식의 물가조사서를 객관적 증빙에 갈음할 수 있다.
- ⑤ 가격담당공무원이 관련업체로부터 가격자료를 제출받을 때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 받아야 한다.
- 제10조(거래실례가격의 적용기준) ① 제9조에 따라 조사된 가격은 규격, 유통단계, 구매요구조건, 구매시점 등을 고려하여 각 거래실례가격을 다양하고 공정하게 비교하여 적정한 가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염매가격 또는 구매요구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가격 등 비정상가격은 배제한다.
 - ② 제1항의 조사기준가격은 조사처의 거래빈도 또는 거래비중을 고려한 최빈평균가격 또는 가중평균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염매가격이란 해당물품의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 즉, 제품원가 또는 구입원가에 일반관리비, 판매비 등을 더한 총판매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말하며, 염매가격 여부는 제7조제2항의 입찰가격산출내역 등의 자료나 해당 물품의 실거래에 대한 수급상황, 계약조건,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염매가격은 제9조제1항제1호의 가격정보 게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장 원가계산

제11조(원가계산의 대상) ① 계약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 1. 신규개발품이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으로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 2. 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 3. 기타 계약관이 필요로 하는 경우
- 제12조(원가계산 방법의 선정) 원가계산은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이하「예정가격 작성기준」이라 한다)에 규정한 기준에 따르되, 계약대상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표준원가계산, 개별원가계산, 종합원가계산 및 특수원가계산 중에서 적합한 방법으로 선정한다.
- 제13조(원가비목별 가격산정의 기준) ① 원가계산 시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구성한 각 비목별 가격은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규정한 산정기준에 따르되 조사기간 및 적용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 ② 원가계산에 있어서 제조원가의 소요 원단위는 해당물품의 규격서, 제작설계서 또는 견품을 근거하여 계약상 대방으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생산 실적치 또는 실측치(수의계약대상업체에 대하여는 해당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를 기준으로 조사한 소요량, 배부율 등을 평균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의 적용이 곤란하거나 부적정한 경우에는 관계문헌 또는 전문 공인기관 등이 조사·공표하여 통용되는 이론치를 적용할 수 있다.
- ③ 원가를 직접 산정하기 곤란한 간접 재료비, 경비 등에 대하여는 2개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결산자료를 근거로 배부하며, 간접노무비율은 최근년도 결산기간 또는 최근 3개월 이상의 노무비 지급명세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의 배부방법은 가액법(재료비법·노무비법·원가법)·시간법·수량법·복합법 등 해당물품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제14조(원가계산자료의 수집) ① 가격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대상업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한다.

- 1. 해당물품의 원가계산서 및 그 산출 증빙자료
- 2. 최근년도 결산서류(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등)
- 3. 제작설계서, 제작도면 및 제작공정표
- 4. 해당물품의 원단위 물량 및 원단위당 단가 증빙자료
- 5. 본사 및 공장의 부서별 인원구성표
- 6. 결산기간 중 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의 구분내역서와 해당기간의 인건비 지급명세서
- 7. 기타 원가계산에 필요한 자료
- ② 원가계산대상업체가 생산실적이 없는 신설업체 또는 자료가 부실한 업체로서 제1항 각 호의 자료제출이 불가능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적용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동일 또는 유사제품 제조업체의 자료를 준용하거나 한국은행이 발행한 "기업경영분석"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제15조(수입물자의 원가계산) ① 수입완제품, 수입원자재, 수입부품 등 수입물품에 대한 원가계산은 이 규정에서 정한 일반물자 원가계산 방법을 기준으로 하되, 「관세법」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에 정한 과세가격 기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② 수입물자의 원가계산 비목은 해당물품의 외화표시원가(CIF 감정가격), 통관료, 보세창고료, 하역료, 국내운반비, 신용장개설수수료, 일반관리비, 이윤 및 제세 등에 의한다.
 - ③ 외화표시원가 산정시 환율은 원가계산 시「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 한다. 다만, 수입거래실례가격을 기준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상의 환율에 따른다.

제5장 사후원가 검토

제16조(사후원가 대상) ① 계약관이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 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원가를 검토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 ② 사후원가 검토는 비목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특수조건에 사후원가 검토대상비목, 범위, 내용, 방법 등을 명시한다.
- **제17조(사후원가 검토기준)** 원가계산에 의한 사후원가 검토는 실제 발생한 제증빙자료를 기초로「예정가격 작성기 준」을 적용하되, 사후원가검토 대상비목은 다음 각 호 또는 각 목을 기준으로 한다.
 - 1. 재료비
 - 가. 직접재료의 소요량은 업체의 실제 투입량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국내 직접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업체의 실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수입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외화표시 가격, 수입부대비용, 환율 등 실 발생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직접재료비는 업체의 실투입량과 실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2. 노무비
 - 가. 직접노무공수는 업체의 실투입공수를 기준으로 한다.
 - 나. 직접노무비 단가는 해당물품 제조기간에 대한 시중 공표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 다. 간접노무비율은 해당물품 제조기간에 대한 임금명세서상의 간접노무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 3. 경비

경비는 해당 비목별로 실제 발생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결산자료를 이용하여 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 제조기 간에 대한 최근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4. 제비율

일반관리비율, 이윤율은 계약시점의 「예정가격 작성기준」상의 적용 "율"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8조(지급대금의 확정) ① 사후원가검토금액(이하 "검토금액"이라 한다)은 제17조의 사후원가 검토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예정가격작성을 위한 기초조사금액에 대한 계약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검토금액과 계약금액을 비교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대금을 확정한다.
 - 1. 검토금액이 계약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한 금액
 - 2. 검토금액이 계약금액과 동일한 경우에는 당초 계약금액
 - 3. 검토금액이 계약금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예산, 사후원가 인정범위 등을 고려하여 계약체결 전에 협의한 범위내 금액
 - ② 사후원가는 사전원가의 불확실한 변동요소를 정확히 포착할 수 있는 시점에서 검토완료 하되 납품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확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업체가 증빙자료의 제출을 지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로인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제6장 원가계산 용역

제19조(원가계산 용역) ① 계약관은 계약목적물의 내용·성질 등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직접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9조제2항 및「예정가격 작성기준」제31조제1호에 따른 전문원가계산용역기 관에 용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 ② 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은「예정가격 작성기준」제31조제2호에 따른 용역기관의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 ③ 계약관은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하여금「국가계약법 시행규칙」및「예정가격 작성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원가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 ④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원가계산 등을 부실하게 하거나 계약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여 국고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장 협정적용물자 예정가격의 결정

- 제20조(협정물자의 운용) 협정물자는 구매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정가격 불비치 대상물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내부적인 기준으로 목표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 제21조(예정가격의 불비치 대상범위)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례규정」 제6조 및「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특례규칙」제2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용역과 기계, 기자재류, 철재류, 식료품류, 동물류, 화공품류(비료제외), 약품류, 유제품, 지류 및 목재류 등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거래의 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 2. 지역 또는 시기별로 가격차가 심한 경우
 - 3. 특정 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 4. 국제시세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 5.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 가격차가 극심한 경우
 - 6. 공급자가 제시한 가격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 7.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어 예정 가격을 비치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22조(목표가격 결정대상) (삭제)

제23조(목표가격의 결정) (삭제)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부칙 <제1709호,2015.8.20.>

이 훈령은 2015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